-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590호

2021. 05. 13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4. 26. 양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1. 4. 30. 행정재경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
2021. 5. 13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행정지원국장)

가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함.(안 제명)

○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,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라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2조 및 제3조)

○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원의 제척·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.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

○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회의의 개최 및 의결사항과 간사 지정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8조 및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가. 개정 취지

○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5조제1항과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해야 함.

○ 또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·회피와 해촉, 그리고 간사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전부 개정안을 제출한 것임.

나. 검토 내용

○ 전부 개정 조례안은 본칙 10조항, 부칙 1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하였음.

○ 안 제3조(구성)제1항을 개정된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"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"로 개정하였음.

- 제2항과제3항은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조문으로 규정한 것임.

○ 안 제5조에 위원의 제척·회피 조문을, 제6조에 위원의 해촉 조문을 신설함.

○ 안 제8조(협의회의 운영)를 신설하여 회의 운영과 개의, 찬성 요건을 규정하였으며, 간사 규정과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였음.

○ 부칙은 1개 조문으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음.

다. 종합의견

○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, 위원회 위원의 제척·회피와 해촉, 그리고 간사에 관한 규정 및 회의 운영 절차 등을 명시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상위법 개정을 따르고 있고, 그 외 법령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보고 드림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